

제	호	유골 [] 인수증		(국립묘지관리소 보관용)
		유골 [] 인도증		
※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로 표시합니다.				
사망자	성명	계급	군번	
	주민등록번호	사망 연월일	안치 연월일	
유족 대표	성명	생년월일 (성별)	사망자와의 관계	
	주소	전자우편주소		
	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		
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에 따른 유골의 임시 안치와 관련하여 유골을 인수·인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.				
※ 아래 확인자는 임시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이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될 수 있음을 담당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 이해하였고,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족 간 합의에 따라 고인의 화장을 결정하였음을 확인하며, 만약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될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유골을 국립묘지의 외의 장소로 옮길 것을 서약합니다.				
년 월 일				
유족 대표 (서명 또는 인)				
국립묘지관리소장 귀하				

자르는 선

제	호	유골 [] 인수증		(유족 보관용)
		유골 [] 인도증		
※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로 표시합니다.				
사망자	성명	계급	군번	
	주민등록번호	사망 연월일	안치 연월일	
유족 대표	성명	생년월일 (성별)	관계	
	주소	전자우편주소		
	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		
위 유골을 인수·인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.				
년 월 일				
국립묘지관리소장직인				
담당자 : (서명 또는 인)				
유족 대표 귀하				
* 담당자의 날인이 없는 경우 무효입니다.				